

오락프로에 대한 비평적인 독자투고를 게재한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사례

LYON and ANOTHER v. THE DAILY TELEGRAPH
LTD. [1943] 1 K. B. 746,

<힐베리(HILBERY)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1942년 3월 5일자 데일리 텔리그래프지(Daily Telegraph)는 『오락물 만평』이라는 제하에, 당시 BBC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각종 오락물에 대한 독자들의 투고를 싣고 있었다. 한 투고자의 성명은 윈슬로우(A. Winslow)로, 주소가 The Vicarage(목사관) Wallington Road, Winchester로 되어 있었다. 윈슬로우는 BBC 라디오에서 수주일 동안 매주 일요일 밤에 방송되는 「Hi Gang」이라는 오락프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투고하였다.

투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하, 매주 일요일 밤 예배시간에 영국의 지성들에게 모욕적이고 값비싼 내용의 오락물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머라는 것이 저속한 욕설의 교환입니다. 한 코미디언은 상대방을 '저 기생충' 이라고 던지시 부르고, 그의 주된 유머라는 것이 간혹 「하도 우스워서 실컷 웃었다」 고 말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여자배우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간혹 예쁜 노래도 부르나, 대체로 저속한 구절을 너무 씁니다. 이렇게 비열한 쇼에 이렇게 돈을 낭비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분명 미치광이의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위 프로에서 Ben Lyon 과 Bebe Daniels 의 역을 맡고 있으면서 주제와 연출을 책임지고 있는 두 사람이 이 사건의 원고로서 신문사의 소유주와 발행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소상에서 투고편지의 내용은 그 오락프로가 너무나 무례하고 저속하기 때문에 목사인 투고자로서는 연출가와 주연 배우들을 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위 투고편지에 의하여 원고들의 배우로서의 성격, 신용, 명성 및 그들의 장래가 심히 훼손되었고 나아가서는 세인들로부터 중상, 증오, 모욕 등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신문사측의 답변은 무엇보다도 투고편지의 내용은 공익사항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악의 없이 선의로 행하여진 공정한 의견과 비평이라는 점이다.

투고편지가 보도된 후 투고자의 주기와 성명이 허구라는 사실, 즉 Winchester 에는 Wallington Road 가 없고, 또 Crockford 의 목사합장에도 윈슬로우(A.Winslow)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힐베리(Hilbery) 판사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투고편지는 원고들의 예술가로서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신문사측의 항변에 대해서는, 그 편지가 공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게 행하여질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의 적시가 부정확한 곳이 한군데 있으니 즉 그 프로를 값비싼(costly) 방송이라고 한 점이다. 더욱이 그 전지에서 개진된 의견이 그 작자에 의하여 정직하게 행하여졌다는 점에 대하여 신문사측의 입증이 부족하다. 한편 투고자가 가명과 허위의 주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그가 전적으로 양심에 의하여 투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신문사측의 공정한 비평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원고들에게 각 50 실링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신문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법원에서의 주장>

가. 신문사측 변호사(Serjeant Sullivan K.C. and Valentine Holmes)의 주장

원심법관의 견해는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공정한 비평」에 관한 판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투고자의 주소 · 성명이 허구라는 사실은 신문사만이 제소당한 경우에는 악의의 증거로서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투고편지에서 그 방송은 값비싼 것이라든가 사실의 적시가 부정확하더라도 그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며 또한 명예훼손적인 비평과 관계 있는 사실도 아니다. 따라서 그 점은 신문사의 공정한 비평의 항변을 부인 당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신문사는 투고자의 성명을 공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확립된 원칙이다.
(변론을 중단받다)

나. 원고들 변호사의 주장

(Slade K. C.)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떠나서 라면, 이 편지의 내용이 공정한 비평이 될 수 없다거나, 다른 사람들도 이 프로에 대하여 이 편지와 같은 의견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 편지가 「공중을 위하여」 (Pro bono Publico) 나 K. C. 라는 필명으로 서명 되었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또 이 편지가 진정 목사에 의하여 쓰여졌다면 공정한 비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소와 성명이 허구인 이상 그것은 불공정한 비평이다. 편지에 쓰여진 비평은, 투고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었든 아니 되었든, 투고자에 의하여 정직하게 이루어진 의견이어야 한다. 투고자가 제소당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소당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내용이 그의 참된 의견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투고내용이 투고자의 참된 의견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A. Winslow 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직한 의견을 개진할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그 입증책임을 다 했다. 따라서 주고자는 어떤 간접적인 동기에 의하여 투고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 그러면 투고자는 그 편지에서 정직하게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신문사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신문에 실린 투고편지는 법률상 공정한 비평이 되지 못하고 신문사와 투고자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그들은 공동불법 행위자이고 투고자가 악의에 의하여 투고 하였다면, 그가 공동피고로 제소당하였든 아니든, 신문사측의 공정한 비평의 항변은 용인되어질 수 없다. 비평이란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할 때에는 공정할 수 없다. 이 투고전지에서 Vicarage, Wallington Road, Winchester 에 살고 있는 A. Winslow 의 정직한 비평이라는 사실이 진실하냐 여부도 하나의 사실 관계이다.

나아가 원고들은 선택적으로, 신문사는 투고자의 성명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실이 있고, 이 경우에는 공정한 비평의 항변권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신문사측 변호사의 답변

(Serjeant Sullivan K. C.)

악의적인 명예훼손내용이 투고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문에 보도되고, 투고자가 제소당한 경우, 그것은 주고자를 위한 악의적인 보도가 된다. 그러나 법원은 신문사의 사자, 대리, 또는 공범이라고 주장되지 않고 또 제소당하지 아니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많은 제삼자의 악의의 문제를 심리할 수는 없다. 신문에 실린 편지의 투고자는 신문사와 공범이 아니다. 신문만이 그 보도에 책임을 진다. 따라서 신문사만이 제소당한 경우에는 투고자의 악의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한 신문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입증 되면 그만이다.

<항소법원의 판단>

가. Scott L. J.의 견해

원심의 Hilbery 판사는,

i) 상당한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신문사측의 보도는 예술가로서의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즉 사생활에서 남자와 여자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Hi Cang!」 프로에서 Ben Lyon 과 Bebe Daniels 로서의 명예를,

ii)또 투고편지의 내용은 정직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의견이고, 비평에 관한 한, 공익사항에 대하여 공정한 비평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편지내용의 사실의 적시에서 값비싼 방송이라는 구절은 부정확하고, 이는 공정한 비평에 쐐기를 박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추측컨대, Hilbery 판사는 부정확한 사실의 적시는 그 자체로서 공정한 비평의 항변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방송이 값비싼 것이라고 하였다는 점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비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나 투고자의 편지에서 그러한 성명을 가진 사람을 추적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주소에 목사관도 없다. 즉 그 편지는 서명 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진짜 A.Winslow 라 하더라도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여 그의 신분을 숨겼기 때문에 익명도 아니다. 그런데 신문사측은 이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공정한 비평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점을 제기했다. 원심법관의 견해는 투고자의 투고내용에 관하여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정한 비평에 관한 입증책임은 신문사에 있고, 따라서 신문사는, 투고자가 그의 정직한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투고자의 동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투고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투고편지가 신문사에 도착될 당시에 투고자의 성명과 주소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은 것은 서로 다름이 없다. 이때 그것을 그대로 보도한 데 대하여 신문사 편집진의 선의는 의심 받을 여지가 없다. 그들은 투고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소와 성명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원심법관은 신문사측에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그는 익명의 투고자의 동기가 전적으로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추단하고, 그 이유때문에 공정한 비평의 항변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미 언급한 비용문제에 대하여서도 원심의 견해는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법률 및 사실점 양자에 걸쳐 위법하다고 생각된다.

방송의 오락프로는 항상 상당한 비용문제를 수반하고 또 공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그 오락프로가 값비싸다는 비평은 결코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적인 것으로는 생각될 수 없다. 설령 그렇게 간주된다 하더라도 국가전체에 대한 비용과 비교하여 그 방송의 상대적 가치를 비판하는 것은 공익에 관한 단순한 비평으로서 공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투고편지의 비평이 신문사의 정직한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원심에서 신문사는 투고자의 공익사항에 대하여 공정한 비평을 하고 있는 전지를 보도한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서로 다름이 없었다. 나는 신문사에 투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확인이 가능하다면, 공익적 이유에서 바람직스럽기는 하지만, 보통 신문사에 알려져 있지 아니한 투고자들은 편집인에게 방문카드나 사신을 동봉함으로써 신분을 알리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문사측에 공정한 비평의 항변권을 부인하는 것은 신문사에 너무나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우게 되고 이는 결국 투고의 자유로운 보도에서 얻어지는 공중의 토론을 감소시키게 된다. 비평 그 자체가 법률의 범위에서 공정하고 신문이 그것을 공익으로 보아 보도한 경우에는 비판 받는 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야기된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반면에 원심판시대로라면 언론에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는 공공의 견지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또 공정한 비평에 또한 종래의 법 원칙에 반하게 된다. 공정한 비평의 항변이 인용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공익사항에 대하여 자유토론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공익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예슬- 음악 ·미술 ·문학 ·드라마 등-에 대하여 비평을 하는 경우 개인의 사적사항이 관련되지 않는 한, 비평이 보다 더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공공의 심미적 복지는 더욱 증대된다.

비평의 공정성이 어떤 애매한 동기에 의하여 불용인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례가 없다. 비평이 간접적이고 부적절하거나 사적인 동기에 의하여 행하여지면, 공정성을 떨 수 없고 따라서 투고자가 명예훼손으로 제소당하면 공정한 비평의 항변권을 잃게 된다고 해서 투고자가 신문사와 공동피고로 제소당하는 경우 신문사 또한 공정한 비평의 항변권을 상실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아니한다. 원고측 변호사는 투고자와 신문사는 공동 불법행위자이고 그들은 함께 승소하거나 제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투고자가 피고로 제소당하지 않으면 신문사는 그 자신의 항변권을 잃게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선례는 없지만 이 사건의 법률점은 신문사가 명예훼손소송에서 피고로 제소당한 경우 공정한 비평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정보원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확립된 법 원칙 속에 실로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공정한 비평의 항변권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신문에 보도된 투고자의 순수한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면 원고측 변호사의 주장이 옳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신문사측이 그 특별사정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신문의 투고자 란에 보도된 비평의 공정성은 비평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적시가 비진실이 아닐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의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 원고측 변호사의 선택적 주장 즉 투고편지를 보도하면서 신문사는 투고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비평의 항변권을 상실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공정성과 확인의무는 전혀 별개의 도덕적·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악의나 간접적 동기는 비평의 공정성을 깨뜨릴 수 있지만 과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나는 투고편지를 분명히 공익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공정한 비평의 한계를 넘지 않았으며, 또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사실에서도 신문사의 공정비평의 항변권을 상실 시킬 만한 것이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공정한 비평의 항변권의 의미가 법조인이나 언론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공정한 비평은 언론 · 출판의 자유라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고 법치주의(rule of law)에 중요하므로 법원은 공정한 비평권을 손상 없이 보존 · 유지하여야 한다. 혹자는 명예훼손사건에서 법원이 피고가 쓰고 말한 것이 공정한 비평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하던 곧 법원이 그의 의견을 수용 ·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법관도 개인으로서 보도된 의견에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반대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정도로 공적의 비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 없다고 판시한다.

나. MacKinnon L. J. 의 견해

항소는 이유 있고, 신문사측에 승소판결을 내리는데 찬성한다. 이 사건을 공정한 비평에 관하여 가장 명백한 사건으로서 투고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소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별 중요성이 없다. 「Hi Gang」프로의 원고를 보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비평은 사법적 절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McQuire v. Western Morning News Ltd. [1903] 2 K. B. 100 사건에서 Collins M. R.의 견해를 옮겨 쓰고자 한다.

「진실한 비평가가 이 작품에 대하여 비평의 견지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면 무대에서 공연이 잘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감일 것이다」

다. Goddard L. J. 의 견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투고자가 신문사에 투고한 편지에 있는 원고들의 방송 오락프로에 대한 비평이다. 그 비평이 용어에 있어 공정하고 정직한 비평의 한계를 일탈하였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서는 주장되지 않았고 단지 투고자의 성명과 주소가 거짓인 경우에 신문사는 공정한 비평의 항변권을 상실하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주장이 있었을 뿐이다. 원심도 후자의 경우 신문사는 그 항변권을 잃는다고 판시하였다.

주소는 거짓임이 분명하나, 성명은 그것만으로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주소가 Vicarage 로 되어 있어 투고자는 필시 교구의 목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편지는 목사의 처, 자녀, 하인, 방문객 등의 것일 수도 있다. A. Winslow 가 투고자의 본명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러한 사실은 별 중요성이 없다. 익명은 악의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통상 신문에서 드라마나 음악의 비평은 서명 없이 행해지고 있다. 신문에 보도되는 많은 투고자들은 필명이나 가명의 형식을 이용하고, 때로는 Disgusted(역겨운 자), Mother of Six(여섯 아이의 엄마) 또는 그와 비슷한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쓰기도 한다. Slade 변호사도 그것이 악의의 증거가 아니 된다는 점은 인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악의의 증거도 없고 또 비평 그 자체에도 악의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투고자가 정직하지 않고 또 악의에 의하여 투고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면 신문사는 공정한 비평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사실의 적시에 허위가 있다는 원심의 견해도 따를 수 없다. 투고편지는 값비싼 오락프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의견의 문제이고 명예훼손적인 것이 아니다. 비평은 비용에 기초 된 것이 아니고, 오락프로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주된 유머라는 것이 그렇고 그런 것이고, 또 원고들의 대사내용이 저속한 구절이라고 말한 것은 명백히 비평이다. 항소가 인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항소인용 원심판결취소 신문사승소 소송비용 원고부담」